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연월일	2004. 3. 1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환경부)을 마련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7조, 안 별표1)

○ 과태료 금액 : 10만원 ~ 300만원

○ 신고포상금액 : 3만원 ~ 30만원

다.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8조)

○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시 과태료 적용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

○ 주민신고에 의한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50%경감

라.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지급제외대상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신고포상금 지급은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신고자별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5,000천원(100건 예상)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4.2.6 ~ 2004.2.2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예상수입 : 연간 50,000천원(1회 과태료 평균500,000원)

##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의견제출) ①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및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시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만 한다.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기간내에 사실확인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종이컵에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cm<sup>3</sup>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기타 시장이 신고 포상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에 한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동영상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의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여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7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기 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b>20</b>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b>10</b>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b>7</b>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b>3</b>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b>20</b>



과 대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b>10</b>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b>7</b>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b>30</b>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b>30</b>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b>20</b>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b>10</b>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b>7</b>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b>20</b>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b>10</b>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b>7</b>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b>3</b>

과 태 료				포상금액 (만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 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 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 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6.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7.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100	200	300	<b>20</b>
	50	100	200	<b>10</b>
	30	50	100	<b>7</b>
	10	30	50	<b>3</b>
	100	200	300	<b>20</b>
	200	300	300	
	50	70	100	
	300	300	300	
	50	100	3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범위에서 산입한다.

2.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제3조 관련)

문서번호 :

시행일 :

수신 :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가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서명		
	주소				
	기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년	월		

사 천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부서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환경보호과( 전화 830- 4423)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h1 style="margin: 0;">의견제출서</h1> <span style="font-size: 0.8em; font-weight: normal;">(제3조제2항 관련)</span>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의견제출인 주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전화 :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top: 20px;">사 천 시 장 귀하</p>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4조제1항 관련)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제4조제3항 관련)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제5조제1항 관련)

신청인	①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부 과 기 준		⑥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사 천 시 장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5조제2항 관련)

제 호

수 신 :

발 신 : 사 천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⑥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수납부(제6조 관련)											
①일련 번호	②고지서 번호	③과태료 처분 통지일	④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 료납부 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 제기일	⑫법원 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제13조제1항 관련)**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소 :

② 상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시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귀하

절 취 선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성명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제13조제5항 관련)

(신고내용)

-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 ② 어디서 :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 ③ 위반종별 :
- ④ 상황설명 :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 기타 )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

-----

-----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

-----

-----

(담당공무원의 의견)

-----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제13조제3항 관련)

<b>납입고지(납부)서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b>										사천시 240									
<b>수 납 의 퇴 서 (수납은행보관용)</b>										사천시 240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주 소: 부과대상:										납부자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계									
부과내역		감경(50%)대상								부과내역		감경(50%)대상							
담당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사 천 시 장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사 천 시 장									
<small>*납부장소전국우체국,농협,관내금융기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위하여 납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small>																			

사 천 시 O C R	<b>영수필 통지서(시정보관용)</b>										사천시 240									
										세외수입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 소: 부과대상:										주민등록번호: 부과부서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계										
부과내역		감경(50%)대상								부과내역		감경(50%)대상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사천시 O C R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6항 관련)

<b>납입고지(납부)서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b>										사천시 240
<b>수납 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b>										사천시 240
납부번호	기관	검 회 계	과 목	년 도	월	구 분	실 과	고 지 번 호	검	
납 부 자: 주 소: 부과대상:										납부자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부과내역										
담당자: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사 천 시 장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사 천 시 장
<small>                     *납부정소전국우체국,농협,관내금융기관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위하여 납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small>										

사 천 시 O C R	<b>영수필 통지서(시정보관용)</b>					세외수입	사천시 240								
납부번호	기관	검 회 계	과 목	년 도	월	구 분	실 과	고 지 번 호	검	납기내	까지	원	납기후	까지	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수납인					
부과대상: 부과부서 :										사천시 O C R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계															
부과내역															
										사 천 시 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한다)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기보증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비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비용기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1회용품및세부준수사항[제4조관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제4조관련)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1회용컵(종이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시행일200371》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소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	가.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시행일200371》	○1회용 봉투쇼핑백
	나.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시행일200371》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소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시행일 200371》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소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대규모점포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1회용품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시행일 200371》

※ 비 고

1. 제1호 가목의 경우 중 다음 각호의 경우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의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에는 1회용품을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4.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경우 중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 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장비구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6. 제4호 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7. 제5호의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8. 2003년 6월 30일까지는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다음 각목의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제232호)】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②생략

③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환경부)】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 부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법령을 지키는 사업장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 발생 우려
-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운영 필요